

수원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나72431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나72431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5. 4 선고 2022가소714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4. 3. 21.

판결선고 2024. 5. 2.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5. 4. 선고 2022가소7145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주식종목추천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이고,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주식종목추천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22. 2. 8.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12,000,000원, 서비스 이용기간 2022. 2. 8.부터 2023. 2. 8.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유가증권 투자정보와 콘텐츠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C 계약(이하 ‘이 사건 일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KB국민비씨카드로 3,000,000원을, 롯데카드로 4,980,000원과 4,020,000원을 각 결제하였다.

다. 원고는 2022. 3. 7.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12,000,000원, 계약의 유효기간 2022. 3. 7.부터 2022. 5. 7.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1회성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투자비중 등의 정보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C 1회성 주식 종목 상품 계약(이하 ‘이 사건 종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3. 14. KB국민카드로 5,000,000원, 5,000,000원, 2,000,000원을 각 결제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계약 중 환불금 관련 조항과 특약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일반계약

제5조(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내용)

3. 본 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의하여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본 상품 가입 후 아래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투자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가입비 전액 반환 특약의 혜택을 부여한다.

※특약내용

ㄱ. 본 상품 가입 후 5개월 이후, 회사가 동법 제101조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한 종목의 합산수익률이 130% 미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ㄴ. 제1항의 합산수익률은 회사가 본 상품 계약내용에 따라 제공한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매수 추천 종목 중 매도 추천 정보 제공이 완료된 종목으로서 해당 정보에 의할 경우 수익이 발생한 종목의 각 수익률을 산술적 방법에 의하여 합산하여 판단한다.

제6조(해지 및 환불에 관한 사항)

1. 기본 해지수수료는 정가의 10%를 부과한다.
2.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따른 사용료(50,000원)을 공제한다.
3. 중도 해지 시 전문가 콘텐츠 비용(카카오플러스친구 등)이 별도로 청구될 수 있다(가입 금액의 10% 이내).
4. “VIP종목”을 서비스 받은 경우 1종목 당 1개월의 이용으로 간주한다(단, 전략 종목이 여러 건 추천되더라도 최대 3개 상품까지만 차감).

환불금 계산: 서비스 할인가 - 정가의 10%(해지수수료) - 일별사용료*사용일수 - VIP종목수*1개월 - 콘텐츠비용

● 이 사건 종목계약

5. 【투자결과의 귀속】

“갑”이 정보를 제공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을”에게 귀속된다.

6.【계약의 해지 및 환불】

“을”의 중도해지로 인해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갑”은 “을”의 해지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중도해지 수수료(전체 계약금액의 10%) 및 “을”이 이미 제공받은 주식 종목 서비스의 가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 “을”은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1회성 주식 종목 제공 서비스로, “을”이 지급한 계약금액은 일회 소멸성 비용에 대한 대가이며, “갑”이 제공하는 주식 종목이 “을”에게 공개됨과 동시에 소비되어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낮아짐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미 제공받은 주식 종목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환불금액 산정 예시〉

-상품 종목 개수: 2개, 상품 1개당 가격: 10,000,000원, 전체 계약 금액: 20,000,000원

-“을”의 중도해지 시, 사용 종목 1개(10,000,000원), 미사용 종목 1개(10,000,000원)

환불금액: 전체 계약금액 20,000,000원 - {중도해지 수수료 2,000,000원(전체 계약금액의 10%) + 사용 종목 대가 10,000,000원(1개당 가격 10,000,000원 × 1개)}

마. 원고의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해지 의사표시로 2022. 7. 19.경 이 사건 각 계약은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 10, 11, 13 내지 15호증, 을 제1, 2,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허위, 과장광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환급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입비 가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자본시장법 제55조는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일반계약에서 가입 5개월 후 합산수익률이 130%가 되지 않으면 가입비를 전액 반환해주겠다고

하였고, 이 사건 종목계약에서 2개월 내에 300%의 수익을 약속하였는바, 이는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해당하고, 피고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 하였으나 실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본시장법 제55조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인 피고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약정은 자본시장법 제55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결국 이 사건 각 계약 전부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가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일반계약의 경우 원고의 가입 5개월 후 합산수익률 130%가 달성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가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전액 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인바(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다툼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하나의 합의 기준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44. 인터넷콘텐츠업(1개 업종)' 항목에서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에 그 해결기준을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환급'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원고에게 곧바로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제권이나 가입비 전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자본시장법 제55조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계약이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가) 자본시장법 제55조 제1호, 제3호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와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법 규정의 문언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인 피고에게 자본시장법 제55조가 곧바로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55조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자본시장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인 피고에게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설령 피고에게 자본시장법 제55조의 유추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일반계약의 특약은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고가 정보를 제공한 종목의 합산수익률이 130%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가입비만을 반환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종목계약의 경우 갑 제12호증에 나타난 피고 직원의 언급(이사님 종목은 여태까지 틀린 적 없고 제가 2달 안에 300퍼센트 말했지만 이건 보수적으로 잡은 거구요)은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장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실제로 300%의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피고가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은 아니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자본시장법 제55조 제1호,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각 계약이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일반계약의 합산수익률 미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일반계약이 체결된 날인 2022. 2. 8.부터 2022. 7. 8.까지 5개월 동안 위 특약내용에 따라 피고의 매수 추천 종목 중 매도 추천 정보 제공이 완료된 종목으로서 수익이 발생한 종목의 각 수익률을 산술적 방법에 의하여 합산한(즉, 원고 본인이 실제로 거래한 종목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률이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피고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매수 및 매도 투자정보 전체 건수를 합산한) 수익률이 130%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일반계약에 따른 5,473,973원의 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473,9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8. 2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5.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진, 판사 김용태, 판사 이수영

1) 원고의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